

#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72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28일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하여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은 구조물 등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비용 청구 및 환수 등을 통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안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6월 25일 새벽 5시 20분을 기해 지난 5월 10일부터 46일간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우리공화당의 모든 구조물과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음.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철거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철거물의 2배에 달하는 천막과 차양막 등을 또 다시 설치하여 공권력을 비웃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의회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는 우리공화당의 행태로 인해 야기되는 시민불편, 행정력과 공권력 낭비,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수호,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불법 점거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과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및 환수를 통해 법의 엄정함과 단호함을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공화당은 공당(公黨)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 헌법」, 「행정대집행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시장, 우리공화당 대표

#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하여 농성 중인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5월 10일 광화문광장 기습점거 이후 6월 25일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신고 또는 허가절차 없이 불법천막을 재설치한 행태에 대하여 우리의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우리공화당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대집행비용징수, 변상금부과, 민·형사상소송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공화당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소모적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6.2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